<bof>

1. [%1](#1 동업기업 과세특례)(#2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3 Taxing each partner without taxing the partnership)[n]
   1. [1](#1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란?)(#2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란?)(#3 What is the system for taxing each partner without taxing the partnership?)[n]
      1. {1}(#1 동업기업을 실질적 측면에서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동업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2 동업기업을 실질적 측면에서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동업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3 It is a system in which a partnership is effectively a pass-through entity, meaning that income generated by the partnership is not taxed at the partnership level, but is attributed to the members of the partnership and taxed on a per-partner basis.){r3<n>,r4<n>}
   2. [2](#1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2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의 적용범위)(#3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ystem that does not tax the partnership but taxes each of its partners)[n]
      1. [3](#1 동업기업이란(조특법§100의14))(#2 동업기업이란)(#3 What is a partnership)[n]
         1. {1}(#1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2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동력이나 용역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3 An organization established by two or more persons to share profits or losses incurred in the management of a joint business by contributing money or other property or labor or services.){r1<n>,r5<n>,r6<n>}
      2. [4](#1 동업기업의 범위(조특법§100의15))(#2 동업기업의 범위)(#3 Scope of association)[n]
         1. [5](#1 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신청한 경우)(#2 2인 이상이 자본금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를 적용신청한 경우)(#3 When two or more persons collect capital and operate a business together and apply for the system of taxing each of them without taxing the partnership) [T,r3<n>,r6<n>]
            1. {1}(#1 =｢민법｣에 따른 조합)(#2 =｢민법｣에 따른 2인 이상이 자본금을 모아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기업)(#3 =A corporation under the ｢Civil Code｣ in which two or more persons have raised capital and decided to engage in a joint business){n}
            2. {2}(#1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2 =｢상법｣에 따른 2인 이상이 자본금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자와 경영자가 분리된 기업 및 그 투자자가 익명인 기업(관련법에 따른 2인 이상이 자본금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자와 경영자가 분리된 기업 및 그 투자자가 익명인 기업은 제외))(#3 =Enterprises with separate investors and managers who jointly operate a business with capital raised by two or more persons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Code｣, and enterprises whose investors are anonymous (excluding enterprises with separate investors and managers who jointly operate a business with capital raised by two or more person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enterprises whose investors are anonymous)){n}
            3. {3}(#1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2 =｢상법｣에 따른 회사에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구성원만 있는 회사 및 회사에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구성원과 회사에 투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지는 구성원으로 구성된 회사(관련법에 따른 회사에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구성원과 회사에 투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지는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 중 회사에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구성원이 직접 운영하는 펀드가 아닌 것은 제외))(#3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Code｣ that have only members who are liable to the company in an unlimited manner and members who are liable to the company in an unlimited manner and members who are liable for the amount invested in the company (except for a company that is a complex organization consisting of members who are liable to the company in an unlimited manner and members who are liable for the amount invested in the company under applicable law, which is not a fund directly operated by members who are liable to the company in an unlimited manner)){n}
         2. [6](#1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단체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신청한 경우)(#2 회사의 구성원 간 결합 관계가 깊고 회사의 구성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성격이 있는 단체가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3 When an organization with the character of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 of the company and direct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applies for the application of a system that does not tax partnerships but taxes each of the members of the company) [T,r3<n>,r5<n>]
            1. {1}(#1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2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및 2인 이상이 자본금을 모아 공동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기업)(#3 =Law firms under the Lawyers Act and enterprises in which two or more persons collect capital and jointly engage in law practice){n}
            2. {2}(#1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2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3 =Patent Firm under the Patent Attorney Act){n}
            3. {3}(#1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2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3 =Labor Firm under the Certified Labor and Employment Law){n}
            4. {4}(#1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2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법인)(#3 =Law Firm under the Legal Affairs Act){n}
            5. {5}(#1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특허법인(유한) (’1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2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법무법인(납입한 자본금만큼 책임을 지는 법인), 특허법인(납입한 자본금만큼 책임을 지는 법인) (’14.1.1. 이후 연도부터),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3 =Entities that provide professional human services: law firms (liable for the amount of paid-in capital), patent firms (liable for the amount of paid-in capital) (from January 1, 2014 onwards), accounting firms, tax firms, and customs firms) {n}
            6. {6}(#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2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를 규정한 법에 따른 외국단체)(#3 =A foreign organization pursuant to a law stipulating the reduction or severity of taxes){n}
         3. [7](#1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2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3 To apply for the system of taxing each partner without taxing the partnership)[n]
            1. {1}(#1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설립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조특법§100의17),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은 5년간은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조특법§100의17).)(#2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설립 연도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를 적용받은 법인은 5년간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3 An application must be made before the start date of the first business year (within one month after the start date of the year of establishment), and a corporation that has applied the system of taxing each partner without taxing the partnership must continue to apply it for five years.){r1<n>,r3<n>}
      3. [8](#1 동업자군(조특법§100의14))(#2 동업자의 구분)(#3 Classification of Partners)[T,r3<n>]
         1. {1}(#1 =동업자군은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으로 구분합니다.)(#2 =동업자의 구분은 국내에 거주하는 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 국내의 법인, 외국법인으로 구분합니다.)(#3 =Classification of partners is divided into domestic resident, non-domestic resident, domestic corporation, foreign corporation) {n}
         2. {2}(#1 =동업자군별로 각각 소득금액･결손금을 달리 구분하고 세율 및 과세방식(종합･분류･ 분리과세)도 달리 적용합니다.)(#2 =구분된 동업자별로 각각 과세대상 소득 및 손실액을 달리 구분하고 세율 및 과세방식(동업기업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거나 분리하여 과세)도 달리 적용합니다.)(#3 =Differentiate the amount of taxable income and loss for each group of partners and apply different tax rates and taxation methods (combined or separate taxation of partnership income).) {n}
         3. {3}(#1 =계산･배분 순서：①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 ②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적용 → ③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2 =계산･배분 순서：① 구분된 동업자별 동업기업 과세대상 소득 및 손실액 → ② 구분된 동업자별 이익이나 손실을 나누어 받기로 정한 비율 적용 → ③ 구분된 동업자별 나누어야 할 과세대상 소득 및 손실 계산)(#3 =Calculation and apportionment sequence: ① Determine the taxable income and loss of the partnership for each separate partner → ② Apply the proportion of profit or loss to be apportioned among the separate partners → ③ Calculate the taxable income and loss to be apportioned among the separate partners.){n}
      4. [9](#1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조특법§100의16))(#2 법인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사업장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매각하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신고)(#3 Declaration of corporate taxable income for the case where a corporation sells all property of value of the business premises while organizing the business)[n]
         1. [10](#1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법인의 납세의무)(#2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 적용 법인의 납세의무)(#3 Tax liability of a corporation subject to the system of taxing each of its partners without taxing the partnership)[n]
            1. {1}(#1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79①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55①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2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법인은 법인세법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사업장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매각하는 경우의 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에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3 A domestic corporation that is subject to the system of taxing each of its partners without taxing the partnership, shall pay corporate income tax on the amount of taxable incom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in accordance with the amount of "income from the sale of all property of value of the business premises in winding up the business" and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to the amount of taxable base on which the tax is imposed.){r11<n>,r12<n>,r1<n>}
         2. [11] (#1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법인의 신고기한)(#2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3 Filing deadline for corporations applying the system of taxing each partner without taxing the partnership)[n]
            1. {1}(#1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2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최초 연도의 전년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3 Due by the third month after the end of the previous business year in the first business year in which the system of taxing each partner without taxing the partnership is applied){r10<n>,r12<n>,r1<n>}
         3. [12](#1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2 법인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사업장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매각하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에 대한 법인세)(#3 Corporate tax on the equivalent of a case where a corporation sells everything of property value in its place of business while winding up its business)[n]
            1. {1}(#1 신고기한부터 3년 동안 균등액 이상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신고기한부터 3년 동안 분할하여 동일하게 나눈 금액 이상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It is required to be paid in equal installments over three years from the due date.){r10<n>,r11<n>,r1<n>}
   3. [13](#1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2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3 Calculation and apportionment of income, etc)[n]
      1. [14](#1 소득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100의18))(#2 소득의 계산 및 배분)(#3 Calculation and apportionment of income)[n]
         1. [15](#1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2 이익이나 손실을 나누어 받기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3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ratio of profit or loss to be shared)[n]
            1. {1}(#1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을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실제 자산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강제적으로 배분))(#2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을 이익이나 손실을 나누어 받기로 정한 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동업기업의 과세대상 소득 및 손실 금액은 실제 자산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강제적으로 배분))(#3 No income tax or corporate tax is levied on a partnership, but the income is apportioned to the partn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portion of profit or loss and taxed as income tax or corporate tax. (The amount of taxable income and loss of the partnership shall be compulsorily apportioned on the last day of each tax year of the partnership regardless of the actual distribution of assets)) {r16<n>,r1<n>}
         2. [16](#1 약정 손익배분비율 적용)(#2 이익이나 손실을 나누어 받기로 정한 비율 적용)(#3 Apply the agreed-upon percentage of gain or loss)[n]
            1. {1}(#1 원칙적으로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고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2 원칙적으로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할 금액을 상세히 작성한 서류의 신고 시 신고한 이익이나 손실을 나누어 받기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고 신고한 비율이 없으면 동업기업에 투자한 비율을 적용합니다.)(#3 As a general rule, apply the profit or loss sharing ratio declared by the associate in the document detailing the calculation and distribution of income, and if there is no declared ratio, apply the ratio invested in the associate.){r15<n>,r1<n>}
      2. [17](#1 결손금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조특법§100의18))(#2 세법상 비용이 수익을 초과한 금액 배분한도 및 다음 연도 이후에 배분)(#3 Limit on allocation of amount by which tax expenses exceed revenue and allocation after the following year)[n]
         1. [18] (#1 결손금 배분 한도 및 이월배분)(#2 세법상 비용이 수익을 초과한 금액 배분한도 및 다음 연도 이후에 배분)(#3 Limitation on allocation of amount by which taxable expenses exceeded revenues and allocation in subsequent years)[n]
            1. {1}(#1 동업기업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하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10년(’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15년)간 이월배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2 동업기업의 세법상 비용이 수익을 초과한 금액 은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투자한 비율 을 한도로 배분하되 배분한도를 초과한 세법상 비용이 수익을 초과한 금액은 10년(’21.1.1 이후 연도에 발생한 세법상 비용이 수익을 초과한 금액부터 15년)간 이월배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3 The amount by which a partner's taxable expenses exceed its revenues is allocated to the extent of the partner's investment in the partner as of the end of the year, but the amount by which the taxable expenses exceed its revenues is carried forward for 10 years (15 years from the amount by which the taxable expenses exceed its revenues incurred in tax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21).){r19<n>,r15<n>}
         2. [19](#1 수동적 동업자의 결손금 배분)(#2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동업자의 세법상 비용이 수익을 초과한 금액 배분)(#3 Allocation of a non-managing partner's taxable expenses in excess of profits)[n]
            1. {1}(#1 수동적 동업자는 소극적 투자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결손금 배분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구분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2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동업자는 소극적 투자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세법상 비용이 수익을 초과한 금액을 배분하지 않고, 소득도 사업소득 등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3 Partners who do not participate in management have the character of passive investors, so we do not allocate the amount by which tax expenses exceed revenues and classify their income as dividend income rather than business income.){r18<n>,r15<n>}
      3. [20](#1 동업기업과세특례 소득의 계산 및 배분 관련 예규)(#2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 관련 예규)(#3 Rules for calculating and apportioning income for partnerships that are subject to the system of taxing each partner without taxing the partnership)[n]
         1. [21](#1 출자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2 동업기업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계산 방법)(#3 How to calculate the taxable income of a partner when distributing in excess of the amount invested in a partnership)[n]
            1. {1}(#1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로서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이하 ‘A법인’)에게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른 A법인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A법인이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 제외)･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A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서면-2020- 법령해석국조-2523, 2021.08.06.))(#2 동업기업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인 경우로서 동업자 중 일부가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이하 ‘A법인’)에게 해당 연도의 종료일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를 규정한 법에 따른 A법인이 배분받은 과세 대상 이익이나 손실은 A법인이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를 규정한 법에 따라 배분받은 과세 대상 이익이나 손실에서 해당 연도에 발생한 관련법에 따른 보수(성과보수 제외)･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나누어 받기로 정한 비율에 따라 A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서면-2020- 법령해석국조-2523, 2021.08.06.))(#3 When a partnership is a fund that manages funds collected from investors in stocks, bonds, etc. and some of the partners participate in management, if the income is distributed to a passive partn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rporation') that is a foreign corporation on the last day of the year, the taxable object distributed by A corporation under the law that stipulates the reduction or heavy taxation of taxation. Profit or loss shall be the taxable profit or loss distributed by the A 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stipulating the reduction or heavy taxation, minus the amount attributable to the A 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 of remuneration (excluding performance remuneration) and commission accrued in the year in accordance with the proportion determined to share in the profit or loss of the partner corporation (written 2020- Legal Interpretation Divison -2523, 2021. 08.06.)) {r15<n>}
         2. [22](#1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2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인수한 경우)(#3 In the case of the acquisition of all shares of a partnership that is subject to the system of taxing each of its partners without taxing the partnership)[n]
            1. {1}(#1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 (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서면-2022-법규법인-1036, 2022.5.30.))(#2 국내의 법인(A법인)이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국내의 다른 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인수한 경우 A법인은 각 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세법상 손실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지 않음(서면-2022-법규법인-1036, 2022.5.30.))(#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corporation A) acquires all of the shares of another domestic corporation (corporation B) that is a passive partner in a partnership that is subject to a system that does not tax the partnership but taxes each of its partners, corporation A does not deduct from its taxable income the amount of tax losses that were not allocated to corporation B prior to the acquisition of such shares when allocating the amount of income of the partnership for each year (Doc. No. 1036, 2022.5.30.)){r18<n>}
      4. [23](#1 세액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100의18))(#2 세액의 계산 및 배분)(#3 Calculation and apportionment of tax)[n]
         1. [24](#1 소득의 계산･배분 단계에서는 반영이 불가능한 동업기업 관련 세액)(#2 소득의 계산･배분 단계에서는 반영이 불가능한 동업기업 관련 세액)(#3 Taxes related to partnerships that cannot be reflected at the stage of calculation and allocation of income)[n]
            1. {1}(#1 소득의 계산･배분 단계에서는 반영이 불가능한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 단계에서 세액을 계산하고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합산합니다.)(#2 소득의 계산･배분 단계에서는 반영이 불가능한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 단계에서 세액을 계산하고 이익이나 손실을 나누어 받기로 정한 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의 소득세･법인세에서 빼거나 더합니다.)(#3 Taxes related to partnerships that cannot be reflected in the calculation and apportionment stage of income are calculated at the partnership stage and allocated to partners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profits or losses to be shared, and are subtracted from or added to the income tax or corporate tax of the partner.) {r25<n>,r15<n>}
         2. [25](#1 동업기업 관련 세액)(#2 동업기업 관련 세액)(#3 Taxes related to partnerships)[n]
            1. {1}(#1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이 형식적으로는 법인과 같은 실체적 외관을 갖는 점을 감안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합니다.)(#2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이 형식적으로는 법인과 같이 취급되는 점을 감안 동업기업을 하나의 국내의 법인으로 보아 계산합니다.)(#3 Partnership tax is calculated as if the partnership were a single domestic corporation, given that the partnership is treated as a corporation.) {r24<n>,r15<n>}
         3. [26](#1 원천징수세액)(#2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3 Amount of tax collected and paid in advance when income is paid)[n]
            1. {1}(#1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때에는 동업기업 단계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동업자 단계에서 공제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2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끝나는 때에는 동업기업 단계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한 세액을 동업자 단계에서 빼주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3 When the tax obligation for the distributed income is fulfilled by the partnership enterprise collecting and paying the tax in advance upon disbursing the income,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deducting the pre-collected tax amount at the partner level, the tax amount collected in advance by the partnership enterprise when disbursing the income is deducted from the tax to be collected in advance for the relevant distributed income.){r24<n>,r25<n>}
      5. [27](#1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조특법§100의19))(#2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3 Transaction between a partnership and an associate)[n]
         1. {1}(#1 발생된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급여를 비용 계상할 수 없음))(#2 발생된 수익이나 손실 또는 비용을 세법상 이익이나 손실로 계산할 있습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하게 회사의 이익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인하는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급여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3 You can calculate the generated profit or loss or expense as a profit or loss for tax purposes. If it unfairly reduces the tax burden, you can calculate the corresponding taxable income by applying the rules that deny it as unfairly reducing the company's profit. (You cannot recognize a partner's salary as a tax expense)){r30<n>}
      6. [29](#1 동업기업과세특례 관련 예규)(#2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 관련 예규)(#3 Examples of systems that do not tax partnerships but tax each of their partners)[n]
         1. [30](#1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배분)(#2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동업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비용으로 하여 계산한 세법상 소득을 배분)(#3 Allocation of taxable income calculated by taking management fees paid to business associates who actually execute business as expenses)[n]
            1.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이하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해당 PEF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0 제2항에 따라 해당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배분 하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75, 2021.08.26.))(#2 관련법에 따른 동업기업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인 경우로서 동업자 중 일부가 경영에 참여하는 펀드(이하 ‘PEF’)가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해당 PEF의 세법상 소득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를 규정한 법에 따라 해당 PEF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동업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비용으로 하여 계산한 세법상 소득을 배분 하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75, 2021.08.26.))(#3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n the case where a partnership enterprise fund, which invests funds collected from investors into stocks, bonds, etc., and where some of the partners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F'), applies a system where "the partnership enterprise itself is not taxed, but each of its partners is taxed", when distributing the tax-related income of the PEF to domestic-residing partners who do not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the management fee paid to the partner who effectively carries out the operations of the PEF, as regulated by laws that stipulate tax reduction or surcharge, is considered an expense when calculating the tax-related income to be distributed (Document-2021-Legal Interpretation Act-2875, 2021. 08.26.)) {r27<n>}
         2. [31](#1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2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팔아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3 If the amount of income is generated by selling land not used for business)[n]
            1. {1}(#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 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서면 -2021-법규법인-4605, 2022.1.20.))(#2 부동산을 사고 파는 업을 주로 하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동업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팔아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를 규정한 법에 따라 구분된 동업자별 동업 기업의 세법상 소득을 동업자의 이익이나 손실을 나누어 받기로 정한 비율로 배분함(서면 -2021-법규법인-4605, 2022.1.20.))(#3 If a partnership engaged in the business of buying and selling real estate and subject to the system of taxing each of its partners without taxing the partnership, generates income from the sale of land not used for its business, the taxable income of the partnership shall be allocated to the partners of the partnership in the proportion determined by the law stipulating the reduction or heavy taxation of the profits or losses of the partnership in accordance with the law stipulating the sharing of profits or losses of the partnership (in writing -2021-Legal Code-4605, 2022.1.20.)){r15<n>}
   4. [32](#1 지분가액 조정방법)(#2 지분가액 조정방법)(#3 Equity Value Adjustment Method)[n]
      1. [33](#1 지분가액(조특법§100의20))(#2 지분가액)(#3 Equity value)[n]
         1. {1}(#1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 소득금액･결손금의 배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감 조정해야 합니다.)(#2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 세법상 이익･손실액의 배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더하거나 빼주어야 합니다.)(#3 The tax book value of a partnership interest held by a partner shall be continuously added or subtracted according to the allocation of the amount of taxable profit or loss that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taxable income upon transfer of the partnership interest or distribution of partnership assets.){r34<n>}
      2. [34](#1 지분 양도시 과세(조특법§100의21))(#2 지분을 팔았을 때 과세)(#3 Taxation when selling equity)[n]
         1. [35](#1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2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파는 경우)(#3 When a partner sells an interest in a partnership)[n]
            1. {1}(#1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합니다.)(#2 법인의 주식･사업에 낸 자금을 판 것으로 보아 주식 등 자산양도시 내야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합니다.)(#3 Income tax or corporate tax will be assessed as if the stock or funds contributed to the business were sold.){r36<n>,r33<n>}
         2. [36](#1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의무)(#2 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자의 보유주식수가 변동한 경우 그 상세한 내역을 작성한 서류의 제출 의무)(#3 Obligation to submit a document detailing the changes in the number of shares held by a person holding stock etc. of a corporation)[n]
            1.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1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의무 있음(법인세법§119, 법인세법 시행령§161①2))(#2 관련법에 따른 동업기업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인 경우로서 동업자 중 일부가 경영에 참여하는 펀드는 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자의 보유주식수가 변동한 경우 그 상세한 내역을 작성한 서류의 제출 의무 있음)(#3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in the case where a partnership enterprise fund invests funds collected from investors into stocks, bonds, etc., and some of the partners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there is an obligation to submit a detailed document when there is a change in the number of shares held by a shareholder of the company){r35<n>,r33<n>}
      3. [37](#1 자산 분배시 과세(조특법§100의22))(#2 자산 분배시 과세)(#3 Taxation when distributing assets)[n]
         1. [38](#1 이중과세방지)(#2 동일한 소득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3 Preventing double taxation of the same income)[n]
            1. {1}(#1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실제로 분배받는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 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시가)에 한하여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2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실제로 분배받는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 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시장가치)에 한하여 과세함으로써 동일한 소득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3 Double taxation is prevented by taxing only the value of the assets distributed (market value) in excess of the equity value when the partner actually receives the assets from the associate.) {r39<n>,r33<n>}
         2. [39] (#1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2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3 received a distribution of assets)[n]
            1. {1}(#1 해산 등의 사유로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지분가액에 미달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시가)에 대해 손실로 봅니다.)(#2 사업을 정리하면서 사업장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매각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지분가액에 미달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시장가치)에 대해 손실로 봅니다.)(#3 If a business partner receives assets from a partnership for reasons such as selling all property of value in the business while organizing the business, it is treated as a loss for the value of the assets distributed (market value) in excess of the value of the shareholding.){r38<n>,r33<n>}
   5. [40](#1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2 소득계산 및 배분 소득의 상세한 내역 신고)(#3 Calculate income and report detailed details of distributed income)[n]
      1. [41](#1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기한)(#2 소득계산 및 배분 소득의 상세한 내역의 신고기한)(#3 Deadline to report detailed details of income calculation and distribution)[n]
         1. {1}(#1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업자에게도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2 동업기업은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소득계산 및 배분 소득의 상세한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업자에게도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3 A partnership shall report the details of income calculation and distribution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by March 15 of the following year, and shall also notify the partner of the details of the report related to the partnership.) {r42<n>,r43<n>}
      2. [42](#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2 과세 대상 소득이 없거나 손실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3 For a partnership with no taxable income or a loss)[n]
         1. {1}(#1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여야 함)(#2 소득계산 및 배분 소득의 상세한 내역의 신고기한)(#3 Deadline for reporting detailed details of income calculation and apportionment) { r41<n>,r43<n>}
      3. [43](#1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가산세)(#2 소득계산 및 배분 소득의 상세한 내역 가산세)(#3 Additional tax on detailed details of income calculation and distribution)[n]
         1. {1}(#1 동업기업이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무신고 하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4%(과소 신고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2 동업기업이 소득계산 및 배분 소득의 상세한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소득에 대하여 4%(실제보다 적게 신고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3 If a partnership fails to declare detailed details of income calculation and distribution statement or under-declares actual income, a surcharge of 4% (2% for under-declaration) will be imposed on the amount of unreported or under-declared income.){ r41<n>,r42<n>}

<boe>